議案檢討報告書

1. 發議 또는 提出者: 大田廣域市長

2. 件 名: 大田廣域市低所得住民子女獎學金支給條例中

改正條例案

3. 議 案 要 旨:別 添 參 照

4. 檢討 意見:別添參照

위 議案에 대한 檢討事項을 別添과 같이 報告합니다.

1997年 2月 13日

文教 社會 委員會專門委員 金鎭

大田廣域市低所得住民子女獎學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

檢 討 報 告 書

1997年 2月 13日

文 教 社 會 委 員 會 專 門 委 員

大田廣域市低所得住民子女獎學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

檢 討 報 告

이 條例案은 1997年 2月 4日 大田廣域市長으로부터 提出되어 1997年 2月 5日 當委員會에 回附되었음.

1. 提 案 理 由

그동안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중학생, 실업계 고교생 전원 및 인 문계 고교생 학업성적 30퍼센트이내자에게 학비 (입학금,수업료)

전액이 정부 보조금으로 지원되어 왔고, 인문계 고교생 중 학교성적 30퍼센트 초과자에게는 시에서 장학금을 지급하여 오던것을

'97년부터는 정부에서 중학생, 실업계 고교생 및 인문계 고교생 전원에게 확대 지급하게 되므로 관계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.

2. 主要骨子

- 가. 장학금의 지급대상을 조정함 (안 제2조)
- 나. 지급정지에 관한 사항을 조정함 (안 제6조)
- 다. 장학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조정함 (안 제7조)
- 라. 기금관리 공무원에 관한 사항을 조정함 (안 제9조)

3. 檢討意見

- 동개정조례안은 우리시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·고등학교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1992년 2월 12일 대전광역시조례 제2,207호로 제정된 후 여건 변동에 따라 1995년 3월 18일과 1996년 4월 15일에 조례 제2,456호와 제 2,561호로 일부 개정된 조례가 되겠으며
- 금번의 개정은 금년부터 정부가 생활보호대상자의 인문계 고 교생 자녀에게도 학비를 지원케 됨에 따라 동조례의 장학금 지급대상을 조정하고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내용 으로 그 형식 및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